

P42. 일 지역의 성폭력 상담에 관한 실태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Sexual Violence Relief Counseling in the Resional Area.

박옥임*, 조연숙¹, 김정숙²

순천대학교*, 전남성폭력상담소¹, 동신대학교²

Park, Ok Im* · Cho Yeoun Suk¹⁾ · Kim, Jeoung Sook²⁾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Chonnan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¹⁾

Dep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²⁾

1. 서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성들은 끊임없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성폭력은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통념으로 굳어진 남성의 시각으로만 보아왔을 뿐,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문제나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아 주는 등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한국사회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병리적인 부산물로 인하여 외적, 물질적 차원 및 내적, 정신적 차원과 관련되어 여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남겼다. 한국에서 성폭력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부각된 것은 변월수(1988), 김부남(1991), 김보은(1992) 사건이 세인의 주목을 끌면서 비롯되었다. 이어 1980년대 중반과 후반에 조직된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같은 여성운동단체들이 법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1992년 성폭력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성폭력 특별법]의 입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1993년 12월 17일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93년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을 겪게 되는데, 이전에 성폭력에 규정되지 않던 미묘한 형태의 성폭력이 따로 분류되어 성폭력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shim, 1998). 이 법은 1995년 12월 30일 제정,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후 1999년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1999년 2월 8일 3차 개정 시행)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99년 7월 1일 시행)에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에 관련된 시항들이 명시되면서, 사업주에 대해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加害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이 의무로 부과되었다.

이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정부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펴온 바 있다. 나아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말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심영희, 1998).

그런데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상은 잘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성폭력이 그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 또는 상담을 하거나 가해자가 검거되거나 혹은 제3자가 우연히 발견 또는 목격하는 것 등 이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원숙, 1988).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그 실태파악은 우리 사회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한적으로만 밝혀져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성폭력피해자들이 법의 본래 취지에 맞춰 보호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를 위한 대책의 미비, 가족 및 주변인의 인식부족 등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형식적인 지원절차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법과 사회의 제도권 밖에 있는 성폭력의 위험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인 아동들과 여성들을 법과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 즉,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전체의 의식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을 상담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대상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순천시 소재 C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전남지역의 피해자이다. 연구도구는 인테이크 서식과 상담일지를 참고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1953건으로써 2001년 513부, 2002년 630부, 2003년 630부이었다.

성폭력 상담의 실태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절차는 문헌연구, 실태분석, 사례를 통한 심층면접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인테이크 서식 및 상담일지를 부호화하여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변인들에 의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성별비교를 위해 변수의 특성에 따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의 피해율이 61.9%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학력 또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비율이 62.4%, 미취학 유아 및 초등학생의 비율도 25.2%를 차지하여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저연령화되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99.3%를 차지하고 있다. 20세 이상의 성인이 58.1%로 성범죄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 가해자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성폭력 피해 유형 중 강간이 7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법적 으로 조치할 경우 고소율이나 기소율은 별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법적 조치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자신의 피해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변인으로부터 ‘순결을 잃은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순결이데올리기’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가 68.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중 12.8%가 장애인으로 71.7%가 정신지체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피해 횟수가 1회인 경우보다 지속적인 경우가 61.6%로 이는 장애인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더라도 친족으로 인한 성폭력률이 31.6%를 차지해 신고체계가 주로 주변인 또는 기관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신고방법을 몰라서가 45.3%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체계와 장애인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 애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전남지역의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성폭력 유형은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S지역은 근친이 가해자인 경우로 친족성폭력 발생이 21.3%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Y지역은 어린이성폭력이 51.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K지역은 데이트 성폭력이 41.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 또한 동급생 선후배가 30.0%로 나타났다. K₂ 지역은 성폭력 피해 신고율과 고소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친족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상해부분이 62.6%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타지역 군 및 농촌지역은 성폭력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로 인한 강간이 92.5%로 임신, 낙태, 출산율이 6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의 특징이나 후유증, 피해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또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의 이중성과 가부장적 사고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과 성폭력 관련 공판에서의 2차적인

피해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성폭력피해자들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인식부족으로 또는 형사절차상의 문제점에 의해 더욱 심한 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성폭력피해자 전문보호시설 등 지원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폭력가해자로부터 즉시 격리가 필요한 친족성폭력피해자가 전문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정폭력피해자들과 함께 기거함으로써 그들의 이 야깃거리가 되거나 소외당하는 현상도 가져왔다.

법은 사회변동의 반영으로서 사회변동을 불려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관행이 법으로 정착하기보다 법을 만들어쓰며 관행을 바꾸는 경향이 큰 사회에서는 법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법개정으로 인해 양성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남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통한 성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들은 생애 동안 성폭력을 경험하며 ‘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여성은 통제되고 불평등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성폭력 현상이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설명되듯이 성폭력에 대한 통제 역시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즉 성폭력에 대한 법 규정들이 매우 선택적으로 작용하므로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형사 사법체계의 처리나 재판절차 또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여성에 초점을 집중함으로써 피해자가 성폭력 이상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일어난 사건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효과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예방대책,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 대책, 사회복지 서비스체계 확립, 성폭력 관련 공판에서의 효과적인 법적 권리를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예방대책은 법·제도적 차원과 교육적인 차원 그리고 여성운동의 차원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대책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임상적인 치료는 물론 가족치료, 전문보호시설 확대, 재정지원 등의 환경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 교정 및 치료의 병행화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심리상담, 의료 서비스, 경찰 및 검찰에서의 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비스체계가 총체적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

넷째, 성폭력 관련 공판에서의 효과적인 법적 권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법은 성중립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법이 아닌 추상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외되었거나 하위에 두었던 ‘경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절차적 보호를 구할 권리와 증인신문 내용상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형사절차상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